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천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 덕 균



위 원 이 광 양



위 원 이 상 현



위 원 김 태 원



위 원 오 형 철



1. 총 평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검토한 결과 전년도 이전까지 지적받은 업무상의 내용 등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체납액 관리가 과년도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호전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상당한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상기의 자주재원 등으로 지방세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2002년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0,82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있기까지는 부천시가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 최상의 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부천시 재정안정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재정 건전화에 합치된 부분이 많았으나 아직도 예산 불용액 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일부부서중 한 사업분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2년도부터 운영된 복식부기프로그램으로 부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재정진단의 결과 2002년도에는 안전성 및 수익성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며 성장성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I . 세입 .세출결산 총괄설명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712,828,4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5,181,661,64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832,975,774,885원
(전년도 이월금 120,147,281,885 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92,665,362,952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02,516,298,6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4,226,500,000원(원금 2,700,000,000원, 이자 1,526,500,00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8,289,798,69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38,587,100,130원
 - 사 고 이 월 10,689,269,420원
 - 계속비이월 104,312,129,29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501,34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26,456,985 원이다.

2. 2002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527,131,24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188,249,151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25,134,587,580원
(전년도 이월금 98,003,341,5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68,127,543,23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90,060,705,921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90,060,705,921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0,333,279,930원
 - 사고이월 6,612,127,270원
 - 계속비이월 80,873,848,38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19,9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821,500,341 원이다

3.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 185,697,24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993,412,49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07,841,187,305원
 (전년도 이월금 22,143,940,305 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537,819,722 원이고

- 그 차인잔액은 112,455,592,774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황에 사용한
 4,226,500,000 원 (원금 2,700,000,000원, 이자 1,526,500,00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08,229,092,774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8,253,820,200원
 - 사고이월 4,077,142,150원
 - 계속비이월 23,438,280,91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1,39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604,956,644 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61,076,77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723,535,51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0,755,840,360원
 (전년도 이월금 9,679,064,36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6,915,170,090원이고

- 그 차인잔액은 53,808,365,423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3,808,365,423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7,699,500,200원
 - 사 고 이 월 252,730,200원
 - 계속비이월 7,300,622,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1,39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74,120,153 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1)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42,06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229,31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2,06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84,8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5,244,50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
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5,244,502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 속 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44,502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075,39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0,192,80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075,39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8,229,7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81,963,04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기금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81,963,043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 속 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1,39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0,173원이다.

3)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317,9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0,431,25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17,900,000원
(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85,431,2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85,431,25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속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431,250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8,057,73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72,025,00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8,427,324,880원
(전년도이월금 369,590,8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20,223,2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7,251,801,7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7,251,801,719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311,546,00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 속 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40,255,719원이다.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79,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9,926,40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79,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41,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78,926,40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78,926,406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 속 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8,926,406원이다.

6)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2,573,22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400,490,678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1,882,696,480원

(전년도 이월금 9,309,473,4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41,916,3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8,058,574,3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8,058,574,368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7,387,954,200원

· 사 고 이 월 252,730,200원

· 계 속 비 이 월 7,300,622,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7,267,968 원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7,331,45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20,240,05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331,456,000원
(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815,9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316,424,1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존채
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316,424,135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계 속 비 이 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6,424,135원이다.

III. 일반회계 재무상태 검토

목 적

재정분석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상태를 계수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방법

세입과 세출결산서, 시정 주요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기로 하며, 첫째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안전성, 둘째 장기적인 재무성과의 변동을 예측하는 성장성, 셋째 세입세출의 수지를 살펴보는 수익성(업무의 생산성), 넷째 예산수립의 적성성을 검토하는 예산의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안전성(재무상태의 건전성)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수익적인 측면(동태적)과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정태적)의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였으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총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의 비중과 경상비, 인건비 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검토하였으며,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은 순세계잉여금 잔액의 비율, 지방채 잔액의 비율 및 지방채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자주재원비율 |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 /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지방채 발행제외) | 81.41% | 77.93% | 81.55% | 80.68% | 85.22% |
| 경상비 부담율 |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 / 자주재원 | 70.77% | 78.42% | 65.38% | 66.68% | 52.98% |
| 인건비 부담율 | 인건비 / 자주재원 | 19.74% | 21.98% | 16.04% | 15.18% | 12.01% |
| 잔액 수지율 | 순세계 잉여금 / 세입총액 (전기이월금, 지방채제외) | 13.31% | 7.63% | 9.04% | 7.86% | 12.69% |
| 지방채 잔액비율 | 지방채잔액 / 세입총액 (전년도 이월금, 지방채제외) | 19.73% | 30.92% | 34.01% | 33.31% | 21.14% |
| 지방채 상환능력 | 지방채 상환액 / 자주재원 | 1.93% | 1.84% | 1.59% | 2.08% | 5.65% |
| 시민1인당 채무잔액(천원) | 지방채 잔액 / 시민수 | 73 | 126 | 168 | 182 | 144 |
| 투자비의 지방채부담율 | 당기 지방채 발생액 / 자본적지출액 | 18.90% | 43.44% | 25.00% | 13.67% | 1.30% |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2002년도에 주로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대비 4.54% 증가하였으며 경상비부담율은 자주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는 재정보전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실적이 상당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잔액수지율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2002년도에 대폭 4.83% 증가하여 재무상태의 안전성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02년도에는 26,876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방채조달액은 2,25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잔액도 2002년도에는 감소하여 시민 1인당 채무잔액도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외부차입을 상환한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에도 점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이전보다는 2002년도에 재무상태의 안전성이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세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세입액중에서 미수납된 세외수입의 회수율이 좋아지도록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앞으로도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 장 성

성장성은 동태적인 접근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변동율과 그 추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미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변동과 경제여건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합니다.

성장성의 분석대상은 행정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내적인 부분은 자주재원증가율, 총세입증가율, 실질수지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재정규모증가율, 투자경비비율 등이며, 외적인 부분은 인구증가율로 검토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자주재원증가율 | (당기금액-전기금액)/전기금액 | -14.30% | 5.70% | 26.02% | 10.26% | 37.65% |
| 총세입금증가율 (이월금제외) | (당기세입-전기세입)/전기세입 | -13.21% | 10.41% | 20.43% | 11.45% | 24.52% |
| 실질수지증가율 | (당기수지율-전기수지율)/전기수지율 | 191.29% | -42.64% | 18.38% | -13.02% | 27.56% |
| 인구증가율 | (당기인구-전기인구)/전기인구 | -1.59% | 0.15% | 0.003% | 0.737% | 4.495% |
| 지방세증가율 | (당기지방세-전기지방세)/전기지방세 | -0.68% | -3.76% | 13.73% | 13.10% | 0.51% |
| 투자경비증가율 | 자본지출액/단기세출총액 | 47.20% | 34.62% | 38.15% | 34.67% | 37.10% |
| 재정규모증가율 | 당기총지출예산/전기총지출예산 | 99.67% | 95.87% | 120.59% | 104.13% | 121.77% |
| 1인당 경상경비증가율 | (당기1인당경상경비-전기1인당경상경비) /전기1인상경상경비 | 25.34% | 16.94% | 5.07% | 11.62% | 4.78% |

먼저 행정외적인 부분으로 인구증가율은 2002년도에 4.495%로 98년부터 성장률을 대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이며, 부천상동 신도시 입주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내적인 부분으로는 첫째 자주재원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총세입증가율 등은 연도별 변동이 심한편이나,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재원의 5년평균 증가율이 13.07% 총세입증가율의 경우 5년 평균 증가율이 10.72%, 지방세증가율이 4.58%정도입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된 투자경비비율, 재정규모증가율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였으며, 재정규모증가율의 경우 2002년에 121.77%로 증가하였으며, 투자경비 비율이 세출총액의 3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은 행정외적인 부분과 행정내적인 부분이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경비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성(업무의 생산성)

수익성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생산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의 분석은 자주재원증가율과 세출결산증가율을 비교하는 재정압박지수,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실질수지율과 경상수지를 이용한 이자보상비율 및 불용액 비율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단위 : %, 천원, 회)

| 구 분 | 내 용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주민1인당 지방세액 (천원) | 지방세수납액/주민수 | 169 | 163 | 185 | 208 | 200 |
| 재정압박지수 | 자주재원증가율-세출결산증가율 | -25.97% | 14.01% | -0.28% | 8.31% | 19.30% |
| 지방세 징수율 | 지방세수납액/지방세징수결의액 | 89.79% | 90.21% | 92.28% | 93.83% | 91.52% |
| 세외수입증가율 | (단기세외수입-전기세외수입) / 전기세외수입(이월금제외, 재정보전금포함) | -27.05% | 17.76% | 38.83% | 7.83% | 33.87% |
| 실질수지율 |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액/세입총액 (전년도 이월금제외) | 8.04% | -4.42% | 2.70% | -0.25% | 6.64% |
| 지방세 / 세외수입비율 | 지방세수납액/세외수입수납액 (재정보전금포함) | 127.58% | 104.26% | 85.41% | 89.59% | 52.69% |
| 이자보상비율 | 지방채이자/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재정보전금)-(경상경비-지방채이자) | 0.04 | 0.12 | 0.10 | 0.08 | 0.03 |
| 불용액 비율 | 불용예산/최종세출예산 | 9.40% | 4.21% | 4.75% | 3.86% | 6.38% |
| 주민1인당 경상경비(천원) | 경상경비/주민수 | 214 | 250 | 263 | 293 | 307 |

재정압박지수는 전년도의 8.31%에서 당해연도에는 19.30%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증가율이 세출결산증가율보다 높아 재정압박지수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2.31% 하락하였으므로 체납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26.0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세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36.9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액 64,701백만원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당기순이익율에 해당하는 실질수지율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2001년도의 -0.25%에서 2002년도에는 6.64%로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대비 지방채이자 비율을 검토하는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전년도의 0.08에서 당해연도에는 0.03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52%증가하였으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1인당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4,000원(증가율 4.78%)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증가율 4.5%를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수익성은 호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안전성

세입.세출의 근간이 예산편성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의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부천시 업무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한 예산의 변동이 심한 경우 재정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예산변동을 등 예산의 안전성에 대하여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지방세 예산변동율 | (지방세최종예산-지방세최초예산) ÷지방세최종예산(예산서) | 0.00% | 3.92% | 5.93% | 4.37% | 1.77% |
| 세외수입 예산변동율 | (세외수입최종예산-세외수입최초예산) ÷세외수입최종예산(예산서) | -32.47% | 43.68% | 20.46% | -2.66% | 31.36% |
| 지방채발행 예산변동율 | (지방채최종예산-지방채최초예산) ÷지방채최종예산(예산서) | 71.55% | 0.88% | 100.00% | 43.20% | 0.00% |
| 이월예산비율 | (명시이월+사고이월) ÷ 최종산출예산(결산서) | 3.93% | 2.72% | 2.82% | 5.10% | 7.00% |
| 예비비비율 | 예비비예산÷최종세출예산 (예산서) | 1.82% | 1.36% | 0.72% | 0.89% | 2.04% |
| 예비비사용비율 | 예비비지출÷최종세출지출액 (결산서) | 1.19% | 0.27% | 0.31% | 0.23% | 0.00% |
| 일반회계비율 | 일반회계세출예산÷전체세출예산 (예산서) | 74.90% | 87.44% | 82.86% | 84.09% | 89.61% |
| 계속비이월액 변동율 | (당기계속비이월액-전기계속비이월액) ÷당기계속비이월액(결산서) | -105.17% | 48.12% | -6.61% | 7.68% | 18.33% |

지방세 예산변동율 등을 검토한 바 지방세예산변동율과 지방채변동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양호하나 세외수입의 예산변동율이 31.86%로 높아 예산편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채 예산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도 축소되어 예산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의 경우 연도별 변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천시의 사업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예비비의 경우 사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비비의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의 요약

시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기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의 안전성과 수익성은 2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등의 증가로 인하여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의 측면에서 불용액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52% 증가하였으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예산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장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의 안정성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계획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예산과 지방채 변동예산은 적절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재무상태의 건전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원발굴의 노력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에 대한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세가 계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IV. 세입결산

1. 총괄

- 2002년 세입규모는 수납액 기준으로 모두 8,95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582억원으로 74%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2,370억원으로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수납액 | | 구성비 | | | |
|-----------|-------|-------|------|------|------|------|
| | 전기 | 당기 | 전기 | 전기 | 당기 | 당기 |
| 일반회계 | 5,286 | 6,582 | 73% | 100% | 74% | 100% |
| 지방세 | 1,632 | 1,641 | | 31% | | 25% |
| 세외수입 | 1,907 | 2,784 | | 36% | | 42% |
| 교부금, 보조금등 | 1,457 | 2,134 | | 28% | | 32% |
| 지방채 | 290 | 23 | | 5% | | 1% |
| 특별회계 | 1,969 | 2,370 | 27% | 100% | 26% | 100% |
| 공기업 | 1,158 | 1,663 | | | 59% | 70% |
| 기타 | 811 | 707 | | | 41% | 30% |
| 합계 | 7,255 | 8,952 | 100% | | 100% | |

- 일반회계는 지방세(시세)가 1,641억원으로 25%를, 세외수입이 2,784억원으로 42%를 교부금등 의존재원수입이 2,134억원으로 32%를 지방채가 23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의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당기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증가는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과 결손율을 보면 수납율이 91.4%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0.7%정도 높아졌으며, 결손율도 0.1%높아졌습니다.

| 구 분 | 금 액(억원) | | | 비 율(%) | | |
|---------|---------|-------|-------|--------|-------|-------|
| | 2000 | 2001 | 2002 | 2000 | 2001 | 2002 |
| 징수결정액 | 8,631 | 7,996 | 9,791 | 100.0 | 100.0 | 100.0 |
| 수 납 액 | 7,911 | 7,255 | 8,952 | 91.7 | 90.7 | 91.4 |
| 미 수납액 | 720 | 741 | 839 | 8.3 | 9.3 | 8.6 |
| 결 손 처 분 | 57 | 75 | 109 | 0.7 | 0.9 | 1.0 |
| 이 월 액 | 663 | 666 | 730 | 7.6 | 8.3 | 7.5 |

- 결론적으로 2002년 회계연도의 경우 2001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문에서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체납관리 및 세원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V. 세출결산

1. 도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체육청소년과)

현 황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년에 2억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상 이 보조금은 경기도민 체육대회사업이 종료된 후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매년 12월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제 점

정산보고서를 즉시 받지 않으면 보조금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를 분실하거나 추가로 증빙자료를 보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자료 내용을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팀은 적극적으로 보조금집행 자료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일부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

현 황

2002년도에 일부 부서중 한 사업분야에서는 예산만 설정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2003년도 본예산은 2002년도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집행한 비율이 현재까지 예산대비 5%이내이며 향후 추가로 집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문 제 점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아니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일부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부분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본 예산 수립과 추가로 경정예산을 수립하는 데 보다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설정되지 아니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주지하도록 권고합니다.

3.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현 황

-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02년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은 지원단체에서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2002년 보조금의 주요 지원상황은 (사)한국예총부천시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복사골예술제의 2억5천만원, 문화의 달 기념행사의 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함.

문 제 점

- 지원단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나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의 한계성으로 지원단체의 지원요구액의 전부를 수용하기가 곤란함.

- 복사골 예술제 기간중에 펼쳐지는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관계로 지원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매년 부족한 상태임.
- 지원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지원에 의존도가 현격히 높으며 자부담 비율이 낮음
- 보조금집행 및 정산에 통일화된 규정이 없어 증빙의 신뢰성, 정확성이 떨어짐. 큰 금액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신뢰성이 떨어짐.

개선방안

- 보조금 예산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도시의 시정방침에 부응해 예산규모를 점차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조금예산의 집행 관련부서 실무팀과 지원단체간의 사전협의하에 주어진 예산의 활용에 효율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 지원단체의 보조금의존도가 높으며 자부담 비율을 일정기준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집행 정산요령”을 숙지하여 보조금이 통일되게 관리,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물품구입시 예산절약을 위한 견적처리

현 황

물품구입시에는 최소 2곳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구입 지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조달가격 이하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 견적을 형식적으로 첨부하고 계속 거래하는 업체와 계약 지출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

개선방안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을 받을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철저한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 현 황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및 동별로 직원수에 따라 월 20만 ~30만원씩 계상하여 연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일부 실과소 및 동에서는 매월 업무추진비를 실과소 주무팀장, 또는 동장, 동주무가 일괄 수령한후 임의보관 사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소 및 동별로 전 직원이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이 요구되는 예산임.
- 따라서 필요시마다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등 증빙을 철저히 하고 카드 사용대금은 카드사용대금 결재일에 일괄하여 카드결재 통장에 입금 지불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기타 지적사항

- 구의 지역경제과의 경우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경우 훈련비 및 수당의 지급시 고용보험가입자는 지급제외 대상이나 지급하는 사례발생
- 전산용지 사용시 어느 부서에서는 년 4,000매의 결손이 있는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전산용지의 서손이 많으므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
- 인증기의 조작미숙으로 결손매수와 결손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징수결의부 상의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카드사용대금
지출원인행위와 동시에 카드결제대금을 입금함으로 인하여 지출원인 행위일과 카드대금결제일 동안 각 부서의 카드결제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 지출원인행위일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카드대금결제일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업지원과의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도시가스 보급률의 상승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VI 개선 권고사항

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문제점

현 황

-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7,320,240,055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815,920원임

문 제 점

- 경영사업투자기금의 세입은 현재 이자수입 뿐 인데 금리의 인하로 수입은 악화됨.
- 약 7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며 2002년에 특별한 투자사업이 없는 상태로 기금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함.

개선방안

일반회계로의 전환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수익사업을 모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람.

2. 부천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부천시 각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실 및 에어로빅, 서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각 동마다 월 강사료 100만원한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며 수강생의 수강료는 지역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임.
- 동의 공간문제 및 강사 수급등의 문제로 수강인원의 차이가 큼
- 유료 수강료의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일괄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문 제 점

시 예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산, 물품비 및 강사료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수강료의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일괄 운영되어 자금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시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강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는 주민자치회의 관리 및 지도가 요망됨
- 수강료 납부의 경우 회원의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 현 황

- 지 원 액 : 283,138천원(인건비 137,551, 관리비 등 145,587)
※ 2003년도 예산액 : 333,415천원
- 직 원 수 : 10명(사서 1, 운전 5, 열람 4)
- 차 량 : 6대
- 사무실임대료 : 전세 240,000천원
- 운영상황
 - 주5회 아파트 단지내 일정지역을 차량별로 1일 2개소(오전.오후 1개소씩) 순회하여 도서대출과 회수를 하고 있음.
 - 운영실적
이용자수 91,295명 대출권수 : 358,762권 순회지역수 72개소

○ 개선방안

- 현재 시립도서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각동사무소 복지관 내에 작은 도서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지원액 234,000천원)
- 향후 각동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이용자들이 인근거리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토록 하고, 이용시간도 증가됨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축소 및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Ⅶ.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1. 농산물 직거래장터 폐쇄에 따른 사후관리(농산지원사업소)

현 황

- 시는 원미구 중동 1141번지에 부지 1,695평, 매장면적 286평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여 부천시가 주관하고, 부천농협이 협조하는 체제로 1999년 1월 9일부터 개장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본 토지는 미매각 상업용지로 2001.12.10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2. 2.20일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폐쇄하게 되었음.

문 제 점

- 중동1141번지는 미매각 상업용지로 매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계획한후 추진하여야 하나,
- 이전대책없이 시행함에 따라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폐쇄에 따라 사용하던 냉방기등 다수의 집기, 비품이 무용지물이 되어 방치되고 있음

개선방안

-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중도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곳으로 관리전환 하는등 조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함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 부천시에서의 시설형 직거래 장터는 마땅한 장터부지 확보곤란과 시설 투자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로 새로이 건립추진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농산물직거래는 아파트 부녀회와 생산자와의 연계를 통한 아파트 농산물직거래 운영과 농협본소 및 지소를 활용한 일일농산물 직거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와 설맞이 추석맞이 등 행사성 직거래, 부천시와 자매결연 지역과의 농산물 직거래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직거래 장터 폐쇄로 인한 집기, 비품중 냉방기는 자연학습공원 내 건물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비품은 2003. 3.13일 불용품으로 매각 조치하였으며, 빙축열 냉방기는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신축예정인 식물원에 재배치 활용 계획임.